

#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자체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

2022. 8.22.

대학일상회복지원단

## 가. 배경

- 1)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, 정서 지원 등을 통해 **정상 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일상의 유지 필요**
- 2) 현장 중심 방역체계와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기반하여 **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한 대학 학업 환경 조성 필요**

## 나. 전국 대학 방역 현황 및 전망

- 1) 전체 확진자 중 **20대 확진자** 비중은 3월 5주부터 증가세를 보여 6월 1주부터 **약 20% 수준을 유지 중**
- 2) 대학별 **자율방역체계 운영**을 통해 학내 확산을 최소화하고, **확진자 급증상황 발생 시 사전 수립한 업무 연속성계획(BCP)에 따라 대응**
  - 3월 확진자 급증으로 20개 대학(23개 캠퍼스)이 BCP에 따른 비상계획 1단계를 발동했으며, 학내 확진율 10% 이상으로 2단계 발동 사례 2건
  - ※ 발동사례(A대): **학내 확진자 비율이 5%를 상회하여, 2주간 실험·실습·실기 외 수업 비대면 전환 및 교직원 30% 재택근무 실시**→2주 후 정상 수업 복귀
- 3) **(전망) 2학기 개강 직전인 8월 중으로 일일 확진자 최대 20만명으로 정점 도달 전망**

## 수업 운영 BCP(업무연속성 계획) 발동 기준

BCP 발동 기준		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			
①전체 방역상황	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	⇒ 1단계 비상계획 발동	⇒ 수업 운영	기준	대응 주요 내용
	②학내 감염상황			해당 스쿨 확진자비율 25%내외	스쿨 재학생의 25%내외 확진자 발생 해당 스쿨
①전체 방역상황	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	⇒ 2단계 비상계획 발동	⇒ 수업 운영	기준	대응 주요 내용
	②학내 감염상황			해당 스쿨 확진자비율 50% 내외	스쿨 재학생의 50%내외 확진자 발생 해당 스쿨
				그 외 스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목별 수업운영계획에 따라 정상 운영</li> </ul>

- (비상계획 발동) BCP발동 기준(①, ②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쿨 별 시점, 기간,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발동
- (발동 후 조치) BCP 발동 시 시점, 기간, 내용 등을 정하여 스쿨내 공지
- 대면수업 재개 시점 또는 재개 결정 시점을 사전에 안내\*하여 학생의 학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

## 학내 주요 기능 및 시설 BCP 발동 기준

BCP 발동 기준		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		
①전체 방역상황	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	⇒ 1단계 비상계획 발동	학내 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교직원 30% 이상 재택근무 권장</b></li> <li>• 학내·외 행사 연기,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 시간 최소화</li> </ul>
②학내 감염상황	해당 대학 확진자비율* <b>5%내외</b> (1주 기준)		⇒	시설 이용
①전체 방역상황	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	⇒ 2단계 비상계획 발동	학내 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</li> <li>• 학내·외 행사 금지</li> </ul>
②학내 감염상황	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10% 내외 (1주 기준)		⇒	시설 이용

- (비상계획 발동) BCP 발동 기준(①, ②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"대학 일상회복지원단" 논의를 거쳐 시점, 기간,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발동
- (발동 후 조치) BCP 발동 시 시점, 기간, 내용 등을 정하여 학내 공지

**가. 운영시기**

- 8월 중순 이후 재유행의 정점 도달이 예측됨에 따라 개강 전·후 3주간(개강 전 1주~개강 후 2주)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
- 기간: 8.22(월)~9.8(목)

**나. 집중점검**

- 대면수업 실시 강의실·실습실, 동아리실·도서관 열람실·기숙사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중점 확인·점검
- 학생 결석사유 확인(확진자일 경우 스쿨행정실 보고), 수업 전·후 환기 등 교수자용 체크리스트\*를 배포하여 강의실 내 자율방역지도 실시

## \* 교수자용 체크리스트

### 자율방역지도 사항

학생 결석 사유 확인 후 확진자일 경우 스쿨 행정실 보고

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(검사) 받고, 집에 머물기 권고

실내 마스크 착용

수업 전/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

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\* 권고

#### \*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

\* 생활 방역 세부 수칙(질병청 지침)

-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-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(3밀·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-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(기침은 옷 소매에)
-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
- ⑤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
-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구분	방역 수칙
실내 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최소 3회(10분)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동시에 열어 <b>환기 실시</b></li> <li>- 냉·난방기(선풍기, 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,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</li> </ul>
기숙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<b>사전준비</b> 및 의심·확진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<b>별도 격리실 확보</b></li> <li>※ 특히 합숙교육 및 합숙훈련을 진행 시 집단감염에 각별히 유의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</li> </ul>
<b>교내 식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 개시 전 <b>전체 소독</b> 실시, 여건에 맞게 <b>접촉 최소화</b> 및 식사 <b>인원 간 물리적 거리유지</b>방안 마련</li> </ul>
숙박형 프로그램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주최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스쿨원장에게 신고 후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 필수(행사 참여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)</li> </ul>
<b>교직원 근무환경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<b>출근하지 않고</b> 쉴 수 있는 문화 조성</li> <li>-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<b>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</b></li> </ul>
마스크 착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실내는 <b>마스크 착용 의무</b> 착용, 특히 식당·카페 등에서 취식 전·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</li> <li>-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·공연·경기장 등에서 <b>마스크 착용 의무</b></li> </ul>

구분	학사운영
수업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<b>대면수업 원칙</b>,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충실히 보호하는 <b>정상 수업 운영</b></li> <li>-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 아닌, <b>교육효과 제고</b> 등을 목적으로 <b>비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개설*</b></li> </ul> <p>* 강의실 내 방역을 이유로 수업 유형을 결정하는 사례 지양</p>
학습권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수자·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<b>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</b>, 원격수업(또는 추후 보강), 학습자료 제공,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<b>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 보호 추진</b></li> </ul>
비대면수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한 <b>비대면 수업은 향후 디지털 혁신·전환의 수단으로 활용</b></li> <li>- 원격수업 관련 법령·훈령에서 규정한 학내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 운영*을 통해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</li> </ul> <p>*① 원격교육관리위원회(총원 7명이상, 학생3/10 이상) 운영    ② 원격수업 관련, 학칙 등 규정 마련    ③ 원격수업 강의평가 2회 실시 및 학생에게 결과 공개    ④ 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</p>



구분	유학생 안전
입국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별 유학생 보호·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입국·이동·검사·격리 등에 필요한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·관리 계획 수립</li> <li>※ 유학생 개인별 검역·방역 관련사항 사전 안내 및 연락망 구축 등</li> </ul>
입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역 결과 모니터링*을 통해 입국 후 방역 절차에 대응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이동 수단 지원 권고</li> <li>* 입국 과정 양성 판정 시, 병원(재택)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</li> <li>※ 인천공항 내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소(T1, T2 각 1개소) 활용 안내</li> </ul>
입국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학생 주거 유형에 따라 대학-지자체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PCR 검사·대기·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책 마련</li> <li>※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후 판정 시까지 거주지 대기 권고</li> </ul>

## 등교(출근) 중지 기준

구분	등교(출근) 중지 기준
본인 확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진자의 격리 기간(7일) 등교(출근) 중지</li> <li>- 격리 해제 전 검사(PCR 검사, 신속항원검사)는 하지 않음</li> </ul>
유증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상 발생 시 검사 실시(지정의료기관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)</li> <li>-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(출근) 가능하나, 증상 있는 동안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(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도 증상 발현 후 7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)</li> </ul>
PCR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자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까지 등교(출근) 중지 권고</li> </ul>
확진자 동거인*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 2회 권고 (3일 이내 PCR검사 우선 권고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) 1회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)</li> <li>- PCR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·출근 중지 권고</li> <li>- 아침·저녁 건강 상태 확인 후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증상 관찰되면 호흡기지정의료기관 방문</li> <li>-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, 영유아·아동(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)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 격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격리기간 등교(출근) 중지</li> </ul>
접촉자**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위험·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활용 5일간 2회 이상 검사 실시 권고</li> <li>- '음성' 으로 확인 되는 경우 등교(출근), '양성' 인 경우 PCR 검사 실시</li> </ul>

\* PCR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자: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 있어 PCR 검사를 받고 결과 기다리는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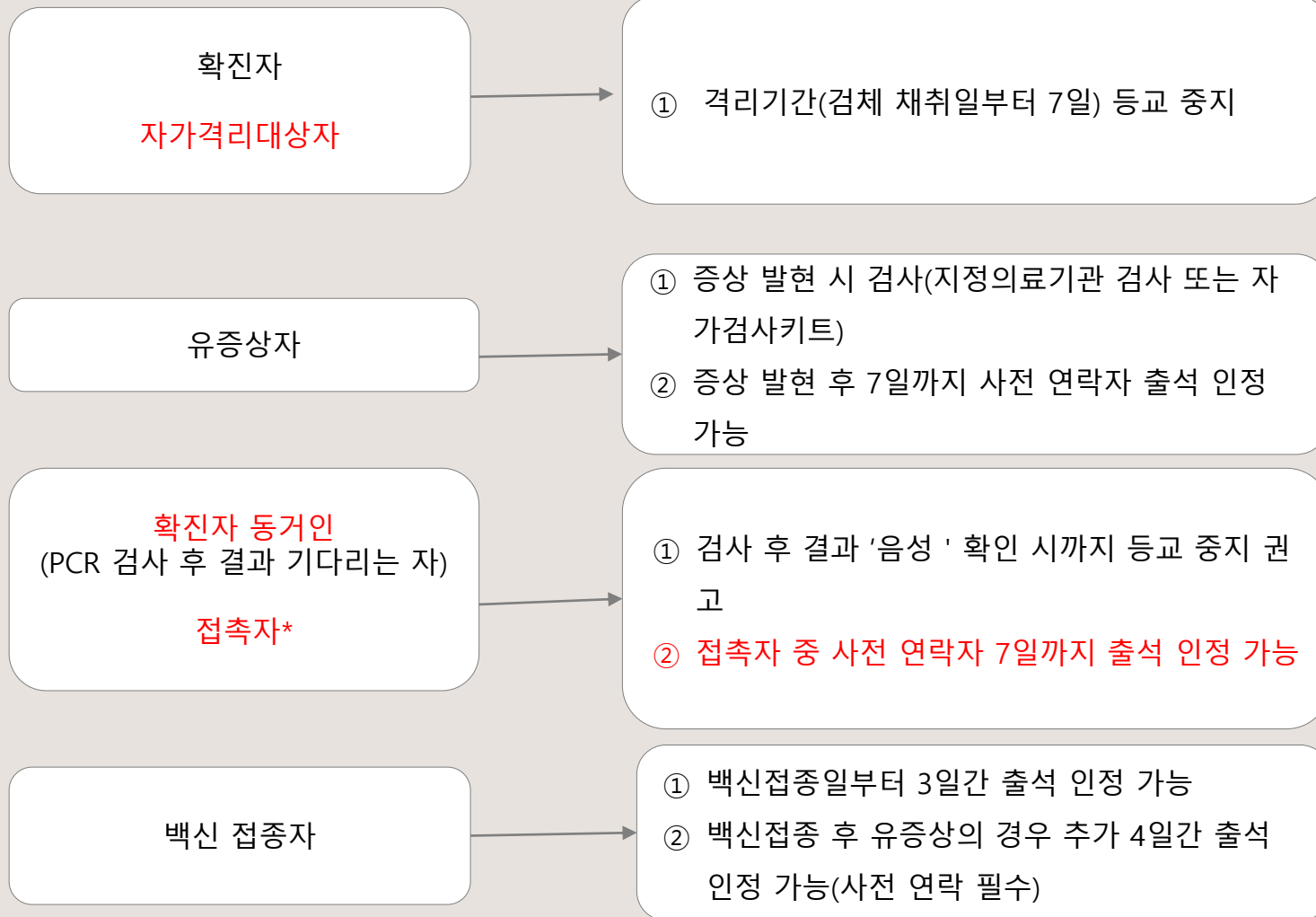
\*\* 동거인: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

\*\*\* 접촉자: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, 동일 공간(부서)에 근무·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·기저질환자(고혈압, 당뇨, 천식, 신부전, 결핵, 간질환 등) 및 유증상자

➡ 등교 중지 사유로 결석 시 사전 연락(스쿨 행정실, 담당과목 교수) 필수(사전 연락 시 출석 인정 가능)

➡ 향후 확진자 격리 기준 변경 시 방역 당국의 기준 반영하여 변경 가능

## 코로나19 관련 미출석시 출석인정 방법



\* 접촉자: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, 동일 공간(부서)에 근무·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·기저질환자(고혈압, 당뇨, 천식, 신부전, 결핵, 간질환 등) 및 유증상자

[출석이의인정신청]시 증빙서류 첨부

<https://attend.ck.ac.kr/m/login.do>

### 증빙서류

#### \* 등교중지대상자

- 자가검사키트 결과 사진(날짜, 본인 얼굴 또는 이름 보이는 사진, 음성인 경우도 인정)
-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서(음성인 경우도 인정)
- 격리대상자확인 문자
- PCR 검사 결과 확인 문자
- 기타 진료 증빙 자료

### 중 택1

#### \* 코로나19 백신접종자

-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접종 증명 관련 문자 등

\* 사전 연락(스쿨 행정실, 담당과목 교수) 시 출석 인정 가능

접촉자	자율 관리	비고
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, 동일 공간(부서)에 근무·생활하는 구성원 중 “고위험·기저질환자* 및 유증상자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이상 검사 실시 권고</li> <li>-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 ‘음성’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(출근), ‘양성’인 경우 PCR 검사 실시</li> </ul>	

\* 고위험·기저질환자: 고혈압, 당뇨, 천식, 신부전, 결핵, 간질환 등

### 《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》

①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②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(교직원)\* 중 “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”

\*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과의 같은반 구성원,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

## 대면 수업 교수자의 코로나19 의심증상/본인 확진/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경우

- (1) 스쿨행정실에 연락하여 상황을 고지합니다.
- (2) 대면수업의 휴강 또는 비대면수업 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.
- (3) 대면수업 휴강 시 출석웹사이트에서 휴보강계획을 등록합니다.(<https://attend.ck.ac.kr/> )
- (4)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스쿨 행정실에 알립니다.
- (5) 증상이 호전된/자가격리 해제 후 대면수업을 재개합니다.

## 대면 수업 학생의 코로나19 의심증상/본인 확진/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경우

- (1) 학생은 스쿨행정실/담당교수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고지합니다.
- (2) 교수자는 해당 학생의 해당일 수업은 결석 처리** 합니다.
- (3) 학생은 학생행동요령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합니다.
- (4)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.(<https://attend.ck.ac.kr/m/login.do>)
- (5) 교수자는 출석이의신청의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출석인정을 체크합니다.
- (6) 증상이 호전된/자가격리 해제 후 대면수업을 참여를 재개합니다.

## 등교 중지가 필요한 학생 행동요령

- (1) 출석해야 하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연락합니다.
- (2) 스쿨 행정실로 연락합니다.

(3)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스쿨행정실과 교수님께 연락합니다.

(4)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 스쿨 행정실로 연락 후 등교합니다.

(5) 학생은 해당 기간 등교 중지 후 출석웹사이트에서 등교 중지 기간의 결석한 수업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[출석이의신청]을 합니다. (<https://attend.ck.ac.kr/m/login.do>)

증상\* 한 가지 이상인 경우 : 코로나19 검사 실시

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, 증상 있는 동안 집에서 경과 관찰 권장  
(사전 연락 시 7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)

\* 발열, 두통, 오한, 근육통, 인후통, 기침, 콧물(코막힘), 호흡곤란, 미각후각소실, 폐렴 등

유증상자인 경우 권고사항

(1) 확진자(자가격리대상자) 증빙서류

-격리 통지 문자

(2) 본인 PCR 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자 증빙서류

- 검사결과(본인 또는 동거인) 문자

(3) 코로나19 의심증상, 접촉자 증빙서류

- 자가검사키트 결과 사진(날짜, 이름 또는 얼굴 포함, 음성인 경우도 인정)



- 결석 전에 담당 교과목 교수 및 스쿨 행정실 사전 연락한 경우 출석 인정 가능

\* 출석 인정: 사전 연락 필수

## 학생 간 대면 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공동체 회복 추진

- (자율방역체계 지속) 학내 방역 상황 점검, 학내 구성원 홍보 등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간 대면 활동을 적극 확대
  - (학생회 활동) 기존의 활동기준(본부·스쿨 사전보고 등) 적용을 해제하고,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 결정·방역 관리 등을 추진하여 학생 자치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 소속감 제고 추진
  - (동아리 활동)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(4.18.)에 따라, 학생 간 자발적 교류 및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학생의 사회·정서적 회복 지원
  - (학내 행사) 방역당국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, 기본 수칙 준수 하에 행사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화 및 일상 회복 추진
    - 숙박형 행사 진행(5.1.이후) 시 승인 기준을 신고 기준으로 완화하며, 교직원 동행 및 개별 활동 자제 조건은 유지
- ※ 숙박형 행사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스쿨 원장에게 신고 후, 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하며, 행사 외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제

### <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>

- 단위 부서의 장 또는 스쿨원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, 학생 인솔,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
- 행사 참여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
-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제
- 마스크 착용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

## 대학 자율방역체계 지속 유지

- (자율방역체계) 대학별 일상회복지원단 등 대학 자율 방역체계를 기반으로, 학내 방역 상황 점검, 학내 구성원 안내·홍보, 유사 시 비상대응 등 지속 추진
- '대학 일상회복지원단' 주요 기능
  -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자체 방역점검 및 비상상황 대응
  - 학생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, BCP 가동 여부 등 방역 관련 주요사항 결정
  - 사전대응계획(BCP)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응 등

###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

2022.08.09

총괄책임  
총장

실무지휘

학생처장 | 교무처장 | 교육지원처장

▶ 예방관리팀  
학생팀장

스쿨·기숙사·문화콘텐츠 아카데미  
팀장 또는 선임·보건담당자  
학생처 학생담당자·보건간호사  
학생대표 학생회장·대의원회 의장

방역 수칙 홍보 및  
방역 관리 업무

▶ 학사관리팀  
교무학사팀장

교무처·스쿨 교무학사 담당자  
미래전략실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  
전략지원실 교원 인사담당자

방역 체계 적용 및  
학사관리 업무

▶ 행정지원팀  
총무팀장 | 관리센터장

교육지원처 직원 인사 및 구매 담당자  
관리센터 안전 및 관리 담당자

출입관리 및  
시설 방역 업무



##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

- (기본 방역 수칙 준수) 개인 방역 수칙 지속 준수

### 《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(권고) 》

\* 생활 방역 세부 수칙(질병청 지침)

-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-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(3밀·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-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(기침은 옷 소매에)
-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
- ⑤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
-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##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- (실내 마스크)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 불가
  -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
- (실외 마스크)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(관람)하는 실외 집회·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
  - 그 외 학내 행사,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, 행사방식(합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),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'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'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

### <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(방역당국 4.29.(금) 브리핑) >

- ① 발열,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\*인 경우
  - \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-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\*을 이용하거나,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 - \* 스포츠 등 경기(관람)장(50인 미만), 유원시설(놀이공원워터파크), 체육시설(겨울 스포츠시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(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)
-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-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(15분 이상 등)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  - 합성·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